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05. 9.

발 의 자 : 오윤수 위원 외 1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2005.8.5 대통령령 제18991호)됨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상향조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인상(안 제3조제2항)
- 출석일수 1일 70,000원 → 1일 100,000원

3. 개정근거

- 가. 지방자치법(2005.8.4 법률제7670호)제32조
- 나. 지방자치법시행령(2005.8.5 대통령령제18991호)제15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증액부분 반영

6.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7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문	개
<p>제3조(회기수당) ① (생략)</p> <p>② 회기수당 지급액을 출석일수 1일에 <u>70,000원</u>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3조(회기수당)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100,000원</u></p> <p>-----</p> <p>③ (현행과 같음)</p>